

예산총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954,659,749	2,136,590,613
일반회계	8,586,378,292	1,717,275,658
특별회계	3,368,281,457	419,314,955
공기업특별회계	1,438,058,459	226,292,655
수도사업특별회계	377,566,628	37,756,66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5,623,741	23,562,374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824,868,090	164,973,618
기타특별회계	1,930,222,998	193,022,3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7,683,967	5,768,397
소방특별회계	344,010,017	34,401,0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5,072,140	68,507,214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25,482,460	22,548,246
수질개선특별회계	9,241,445	924,145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12,815	171,282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79,570	117,957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486,943	848,694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41,227	274,12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888,527	5,288,85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8,283,665	5,828,36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86,905,157	18,690,516
도시개발특별회계	12,850,303	1,285,030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4,758,745	1,475,875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68,926,017	26,892,60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666,39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복구 경비, 상환금(차입금, 예수금)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